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 윤리제도분과('24.4.18)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발표

법무법인 VEAT  
송도영 변호사

# 가상융합산업법령 구조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법안 (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허은아의의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8조(메타버스서비스 화의 촉진) 제10조(메타버스에 이용 되는 우선우선망의 고도화) 제11조(메타버스 융합의 촉진)	제3조(정부의 책무)	<해당 없음>
제3조(기본이념)	제4조(우선허용·사후규 제 원칙)	<해당 없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메타버스산업의 기반조성		
제5조(메타버스진흥기 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
	제10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제19조(통계 및 실태 조사)	제11조(실태조사)	
		제6조(메타버스 사업자의 신고)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5조(세제 지원 등)	제13조(조세 및 부담 금의 감면)	
	제14조(금융지원)	
	제15조(창업 및 민간투 자의 지원)	
제13조(메타버스 연구 개발기반의 조성)		
제16조(표준화)	제19조(표준화)	제14조(표준화)
제10조(메타버스에 이용되는 우선·우선망의 고도화)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	제22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23조(메타버스 협의회)	제23조(협회)	제18조(협회)
	제21조(가상융합 지원센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재원의 확보)
제8조(실태조사)
제3장 메타버스산업 기반조성
제9조(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2조(조세감면)
제13조(금융 지원)
제14조(창업 및 민간 투자의 지원)
제15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16조(표준화)
제17조(메타버스에 이용되는 우선·우선망의 고도화)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19조(협회)
제20조(지역별 메타 버스 지원센터)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법안 (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허은아의의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제4장 메타버스산업 진흥
제12조(사업화 지원)	제12조(가상융합사업 자에 대한 지원)		제22조(메타버스 지원 사업)
제14조(시범사업 등)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메타버스 선도 사업 선정 및 지원) 제12조(메타버스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4조(메타버스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 외진출 지원)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메타버스 활용등)		제26조(중앙행정기관등 의 메타버스 활용 등)
	제27조(메타버스사업 영향평가)		제27조(메타버스사업 영향평가)
제28조(메타버스서비스 의 계속제공 등)	제28조(건전한 메타버 스 생태계의 조성 등)	제19조(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제20조(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자 준수사항)	제28조(건전한 메타 버스 생태계의 조성 등)
			제5장 규제의 개선
제20조(메타버스에 의한 자율규제) 제21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제22조(자율규제단체의 감독)	제24조(자율규제)	제23조(자율규제)	제29조(자율규제)
	제30조(임시기준 등)		제30조(임시기준 등)
	제31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제31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제6장 이용자의 보호
제26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27조(이용자의 행동규정)	제32조(이용자보호 등)	제24조(메타버스 이용 정보 처리 요청 등)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3조(개인정보보호)	제21조(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33조(개인정보 보호)
제1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제3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7장 보칙
			제35조(청문)
	제34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36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 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 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에서 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7조(면책)		제39조(면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실태조사 등)	<b>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b>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b>제5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b>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신고접수증)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b>제6조(전문인력의 양성)</b>	
	제7조(특성화 대학등)	제4조(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지정신청서)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b>제8조(기술개발의 촉진)</b>	
제13조(표준화)	제9조(표준화 지원)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10조(전담기관)	
제18조(협회)	제11조(협회)	제5조(협회의 설립인가)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제12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별표]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6조(지원센터 지정계획의 공고) 제7조(지원센터 지정의 신청) * 별지 제4호서식(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지정서)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b>제13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b>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9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15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28조(임시기준 등)	<b>제16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 제17조(임시기준의 마련 등 기준) / 제18조(임시기준의 마련 등 절차)</b>	제10조(임시기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임시기준 신청서)
제31조(건강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b>제19조(분쟁해결절차의 마련)</b>	
제33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제1장 총칙

# 법 제2조

## 정의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공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 주요사항

-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안(대안) :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근거 또는 기술 기준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메타버스산업 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

# 법 제3조, 제4조, 제5조

## 국가의 책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가상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 법 제6조, 시행령 제2·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6조, 시행령 제2·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법률

**제6조 제6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정취지

- 과기정통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간명하게 규정

# 법 제7조, 제8조

## 재원의 확보, 실태조사

### 법률

**제7조(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법률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 실태조사

### 법률

제8조 제4항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사업자 / 2.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사업자, 기관·단체·협회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 2. 가상융합기술 및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보급 현황
3. 가상융합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 4.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5.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정취지

- 타법에 따른 실태조사 선례를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을 방지
- 가상융합산업의 융·복합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융합사업자 등 외에 개인(학부모 등), 사업자, 기관·단체·협회를 포함

##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 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3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변경)신고

### 법률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가상융합사업자 중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제정취지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정의를 통해 신고대상자를 명확히 함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등을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한 목적**의 신고인 점, **자족적 신고**로서 달리 처벌규정이 없고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연 거래액,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정함
- 설립된지 1년이 되지 않은 소규모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제외

## 3

# 법 제9조, 시행령안 제5조, 시행규칙안 제2·3조

## 가상융합 플랫폼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일반 현황

2.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 개요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② 전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제2조를 준용한다.

## 4

# 법 제10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4조

## 전문인력의 양성, 특성화 대학등

###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운영
4.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협회 및 가상융합사업자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지원 /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에 필요한 지원 /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법 제10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4조

## 전문인력의 양성, 특성화 대학등

### 시행령

**제7조(특성화 대학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이하 “특성화 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4조(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정취지

- 법률상 전문인력 양성의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행이 마련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가상융합산업의 발전 속도 및 동향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적시에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협회 및 가상융합사업자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과는 상이함

# 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

### 법률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법 제12·13조, 시행령 제9조

## 표준화

### 법률

**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 2.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9조(표준화 지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및 제안에 드는 비용
3.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5. 국내외 표준의 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 비용
6. 그 밖에 표준화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법 제14~16조

## 유무선망 고도화, 금융지원,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 법률

**제14조(유·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 에 대하여 경비·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전담기관

### 법률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2. 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제도 개선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감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전담기관

##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 한국전파진흥협회 / 3. 한국인터넷진흥원 /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인접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유통 등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 협회

### 범 록

**제18조(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 협회

### 법률

**제18조** :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1조(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3. 임원 취임승낙서 /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

③ 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에 설립된 사단법인이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정취지

-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가상융합산업의 발전, 자율규제의 구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협회의 설립 절차 규정
- **기존에 설립된 사단법인**도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 협회

### 법률

**제18조** :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5조(협회의 설립인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 제정취지

- 구체적인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되, 동 규칙은 민법에 근거한 법인 인가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설립허가신청서”는 “설립인가신청서”로 간주함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 제19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8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법률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9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8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법률

**제19조** :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2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3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2. 지원센터의 장은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3.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2. 사업계획서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 4. 시설명세서 /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 6. 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 7.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제2문에 따른 지정의 갱신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8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시행령

- 제12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⑦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 제6조(지원센터 지정계획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접수처,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센터 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 2. 지원센터 현황 / 3. 사업추진계획 / 4. 운영 및 사후관리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지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 법 제20조, 시행령 제13조

##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 법률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장비·시설 등의 공동 사용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3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취지

-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들을 규정
- 가상융합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포함)인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인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법 제21조

##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 법률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법 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시범사업

### 법률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련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 서비스등의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9조

##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 법률

- 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 제9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정취지

-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상융합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가상융합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 법 제24조, 제2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 법률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법 제26조, 시행령 제15조

##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 법률

**제26조**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5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에서 개발·운영하려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의 유사·중복성
2.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공공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서”라 하고, “재평가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 제26조, 시행령 제15조

##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 시행령

제15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서를 검토한 후 민간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
2. 법 제22조에 따른 시범사업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4. 그 밖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정취지

-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명시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1)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의 유사·중복성, (2)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과기정통부장관의 개선 조치 요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단, 해당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특성,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예외사항을 규정함

## 제5장 규제 개선

# 법 제27조

## 자율규제

### 법률

**제27조(자율규제)**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자율규약의 제정·개정 및 시행**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협회는 가상융합산업과 융·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와 관련된 협회·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자율규제기구의 규범 제정과정에  
정부(규제당국)가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른 분류

강제적  
(enforced)  
자율규제

위임형  
(mandated)  
자율규제

승인적  
(sanctioned)  
자율규제

자발적  
(voluntary)  
자율규제

자율규제 모델 유형

	자발형	부분 위임형	완전 위임형
정부 개입	없음	법률적 승인·관리·감독	법률적 또는 정책적 승인
기구의 법률상 위상	없음	법률적 지위	법률적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협력 지위
정부 기구와의 관계	관계없음	법률적 위임	법률적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협력 관계
담당 자율기구 수	복수	단수 또는 복수	단수 또는 복수
자율기구 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율기구 운영	다양	이사회 (정부 인사 포함 가능)	이사회
자율기구의 주요 기능	교육·하라인 ·정책연대	교육·하라인 ·정책연대·분쟁조정	교육·하라인 ·정책연대·분쟁조정
자율기구의 재정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사례	미국 등	프랑스의 FDI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AFA

# 법 제28조, 시행령 제16~18조, 시행규칙 제10조

## 임시기준

### 법률

- 제28조(임시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른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 법 제28조, 시행령 제16~18조, 시행규칙 제10조

## 임시기준

### 법률

**제28조** :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6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와 **임시기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 3. **임시기준의 제안 이유** /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6.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 등에게도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 조화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임시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판단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28조, 시행령 제16~18조, 시행규칙 제10조

## 임시기준

### 시행령

**제17조(임시기준의 마련 등 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이용자 편의
3. 안전성 및 위해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임시기준의 마련 등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협의체(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와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시행규칙

**제10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시기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정취지

-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기준의 마련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임시기준 마련의 필요성 판단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시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충실한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과기정통부장관의 **협의체 구성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기준 마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제6장 이용자 보호 등

# 법 제30조, 제31조

## 이용자 보호,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 법률

**제30조(이용자 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4.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상융합사업자는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게시, 전시, 복제, 전송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 제31조, 시행령 제19조

##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 법률

제31조 : ③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및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분쟁해결절차의 마련) ① 법 제31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가상융합 플랫폼의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가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법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

### 제정취지

-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융합서비스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수 요소
- 분쟁해결절차 운영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자 중에서 연 매출액, 연 거래액, 활성 이용자가 수가 상당 수준에 이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거래 분쟁, 특히 C2C 거래의 경우 소액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ADR(대체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현회에서 자율규제 차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감사합니다

질의/응답